

2020년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안내

(Ver 20.02)



구 분	주 요 내 용
근거 법령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법 시행령 제23조(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시험방법, 시험의 공고 및 합격자 결정 등) •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및 수첩발급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응시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5년(소방설비기사의 경우 2년, 소방설비 산업기사의 경우 3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고등교육법 제2조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2년이상 1급 소방안전 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소방안전 관련 학과(소방청장이 정하여 고 시하는 학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 1급 소방 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div style="background-color: #d9ead3; padding: 5px;"> <p>「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안전 관련 학과 및 소방관련 학과 등에 관한 기준」</p> <p>제2조(소방안전 관련 교과목)</p> <p>1. 소방안전관리론(소방학개론, 재난관리론, 소방관계법규를 포함한다) 2. 소방유체역학 3. 위험물질론 및 약제화학 6. 일반건축공학 9. 일반기계공학 4.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7. 일반전기공학 10. 화재유동학(열역학, 열전달을 포함한다) 5. 방화 및 방폭공학 8. 가스안전 11. 화재조사론</p> <p>제3조(소방안전 관련 학과)</p> <p>1. 전기공학과(전기과, 전기설비과, 전자공학과, 전기전자과, 전기전자공학과, 전기제어공학과를 포함한다) 2. 산업안전공학과(산업안전과, 산업공학과, 안전공학과, 안전시스템공학과를 포함한다) 3. 기계공학과(기계과, 기계학과, 기계설계학과, 기계설계공학과, 정밀기계공학과를 포함한다) 4. 건축공학과(건축과, 건축학과, 건축설비학과, 건축설계학과를 포함한다) 5. 화학공학과(공업화학과, 화학공업과를 포함한다) 6. 학군 또는 학부제로 운영되는 대학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 학과에 해당하는 학과</p> <p>제3조의2(소방안전관리학과)</p> <p>1. 소방안전관리과 2. 소방시스템과 3. 소방학과 4. 소방환경관리과 5. 소방공학과 6. 소방행정학과</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행정학(소방학, 소방방재학을 포함한다) 또는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안전 공학을 포함한다) 분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 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10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소방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경력기간은 시험시행일 기준으로 산정하며, 원서접수일 기준에는 응시자격이 해당되지 않으나 시험일 기준으로 응시자격에 해당되는 사람은 원서접수기간 중 가접수 후 추가 서류 제출기간 중 해당 서류 제출 2) “실무경력”은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 조제2항에 따라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을 말하며, 같은 조 제3항(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자 등)에 따라 선임된 경력은 제외됨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개정에 따름) <div style="background-color: #d9ead3;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소방안전관리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18.6.27 이전 취득한 자에 한함) ※ 법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을 따름(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8996호, 2018.6.26.>제3조)</p> <p>※ 상위 시험응시자격으로 하위 시험 응시가능(특급 → 1·2·3급)</p> </div>

시험 정보	시험명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일정 등	<p>• 사이트 시험일정 참고(소방안전교육 >시험신청 >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일정) * 제1차, 제2차시험 분리운영</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th> <th style="width: 10%;">회차</th> <th style="width: 20%;">원서접수</th> <th style="width: 20%;">시 험 일</th> <th style="width: 20%;">합격자발표</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2020년 제12회</td> <td>제1차</td> <td>별도 공지(6월 예정)</td> <td>20.07.18(토)</td> <td>별도 공지</td> </tr> <tr> <td>제2차</td> <td>별도 공지(6월 예정)</td> <td>20.08.22(토)</td> <td>별도 공지</td> </tr> <tr> <td rowspan="2">2020년 제13회</td> <td>제1차</td> <td>미정</td> <td>미정</td> <td>미정</td> </tr> <tr> <td>제2차</td> <td>미정</td> <td>미정</td> <td>미정</td> </tr> </tbody> </table> <p>* 시험일은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및 국가전문자격(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소방교육사, 소방시설관리사 등) 일정 및 공휴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p> <p>※ 참고 사항</p> <p>1) 안전원 인터넷 홈페이지 “소방안전교육-시험신청·접수확인” 코너 중 특급 소방 안전관리자 시험일정 및 장소는 원서접수기간 중에만 등재됩니다.</p> <p>2) 원서접수기간 중 운영되는 특급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의 수료자는 교육 수료일 현장접수에 한하여 접수 가능합니다.</p>					회차	원서접수	시 험 일	합격자발표	2020년 제12회	제1차	별도 공지(6월 예정)	20.07.18(토)	별도 공지	제2차	별도 공지(6월 예정)	20.08.22(토)	별도 공지	2020년 제13회	제1차	미정	미정	미정	제2차	미정	미정
	회차	원서접수	시 험 일	합격자발표																							
2020년 제12회	제1차	별도 공지(6월 예정)	20.07.18(토)	별도 공지																							
	제2차	별도 공지(6월 예정)	20.08.22(토)	별도 공지																							
2020년 제13회	제1차	미정	미정	미정																							
	제2차	미정	미정	미정																							

시험 정보	시험과목	구분	과목	내용
		제1차 시 험	1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윤리 및 리더십 ○ 소방관계법령 ○ 건축·전기·가스 관계법령 및 안전관리 ○ 재난관리 일반 및 관련법령 ○ 초고층특별법 ○ 소방기초이론 ○ 연소·방화·방폭공학
2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층건축물 소방시설 적용기준 ○ 공사장 안전관리 계획 및 화기취급 감독 ○ 종합방재실 운용 ○ 고층건축물 화재 등 재난사례 및 대응방법 ○ 화재원인 조사실무 ○ 위험성 평가기법 및 성능위주 설계 ○ 화재피해 복구 ○ 초고층 건축물 안전관리 우수사례 			
제2차 시 험	1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시설(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의 구조·점검·실습·평가 		
	2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계획 수립 이론·실습·평가 ○ 방재계획 수립 이론·실습·평가 ○ 작동기능점검표 작성 실습·평가 ○ 구조 및 응급처치 이론·실습·평가 ○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이론·실습·평가 ○ 화재대응 및 피난 실습·평가 		
<p>※ 근거 :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및 수첩발급 등에 관한 기준 고시」 별표</p> <p>※ 1) 시험과목은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2) 관련법률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해야 하는 문제는 시험 시행일 시행중인 법률을 적용</p> <p>3) 제1차 시험(선택형 문제) 및 제2차 시험(서술형 주관식) 공통 적용</p>				

	시험방법 및 시간	<table border="1"> <thead> <tr> <th>시험구분</th> <th>출제과목</th> <th>시험 방법</th> <th>시험시간</th> <th>문항수</th> </tr> </thead> <tbody> <tr> <td>제1차 시험</td> <td>1과목, 2과목</td> <td>선택형 (4지 1선택)</td> <td>09:30 ~11:30(120분)</td> <td>100문항 (과목별 50문항)</td> </tr> <tr> <td>제2차 시험</td> <td>1과목, 2과목</td> <td>서술형 (단답형, 기입형 또는 계산형 문제 포함)</td> <td>09:30 ~11:00(90분)</td> <td>총 20문항 (과목별 10문항)</td> </tr> </tbody> </table>	시험구분	출제과목	시험 방법	시험시간	문항수	제1차 시험	1과목, 2과목	선택형 (4지 1선택)	09:30 ~11:30(120분)	100문항 (과목별 50문항)	제2차 시험	1과목, 2과목	서술형 (단답형, 기입형 또는 계산형 문제 포함)	09:30 ~11:00(90분)	총 20문항 (과목별 10문항)
		시험구분	출제과목	시험 방법	시험시간	문항수											
제1차 시험	1과목, 2과목	선택형 (4지 1선택)	09:30 ~11:30(120분)	100문항 (과목별 50문항)													
제2차 시험	1과목, 2과목	서술형 (단답형, 기입형 또는 계산형 문제 포함)	09:30 ~11:00(90분)	총 20문항 (과목별 10문항)													
		<p>※ 시험 시작시간 30분 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p>															
시험 정보	합격자 결정	<table border="1"> <thead> <tr> <th>시험구분</th> <th>시험 방법</th> </tr> </thead> <tbody> <tr> <td>제1차 시험</td> <td> <p>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70점 이상 득점한 사람</p> <p>※ 가점수자의 경우 추가서류 제출기간 중 추가서류가 제출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응시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불합격 처리됨</p> </td> </tr> <tr> <td>제2차 시험</td> <td> <p>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70점 이상 득점한 사람</p> </td> </tr> </tbody> </table>	시험구분	시험 방법	제1차 시험	<p>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70점 이상 득점한 사람</p> <p>※ 가점수자의 경우 추가서류 제출기간 중 추가서류가 제출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응시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불합격 처리됨</p>	제2차 시험	<p>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70점 이상 득점한 사람</p>									
	시험구분	시험 방법															
	제1차 시험	<p>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70점 이상 득점한 사람</p> <p>※ 가점수자의 경우 추가서류 제출기간 중 추가서류가 제출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응시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불합격 처리됨</p>															
	제2차 시험	<p>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70점 이상 득점한 사람</p>															
합격자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표일자 : 시험정보 - 시험일정 등 참조 발표내용 : 합격자 명단(응시지역 및 응시번호) 발표방법 : 안전원사이트(www.kfsi.or.kr) 공지사항 <p>※ 가점수자의 추가서류접수 후 확인 결과 응시자격 기준 미달인 경우 불합격 처리됨</p>																
자격증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기관 : 안전원 14개 시·도 지부 신청방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안전원 방문 : 시도지부에 내방하여 발급신청서 작성 후 발급 2) 온라인 신청 : 안전원홈페이지의 온라인 발급 신청에 따른 발급 ※ 배송료 별도 																
시험의 일부 면제사항	<p>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제1차 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간 제1차 시험을 면제</p> <p>※ 합격한 날(합격자 발표일)과 시험실시 일 기준으로 처리</p>																
시험 접수	접수처	방문접수(시·도 지부사무실) 및 안전원 인터넷사이트 ※ 원서접수 기간 중에만 접수합니다															
	접수방법	<p>직접방문·우편접수 및 인터넷 접수</p> <p>※ 1. 우편접수는 반드시 등기우편을 이용하고 서류제출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봉투에는 “특급소방안전관리자 응시자격 증명서류 재중”을 표기</p> <p>2. 원본제시(소방안전관리자수첩 등)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반신환 봉투에 주소를 기재하고 우표를 부착하여 동봉</p> <p>3. 인터넷 접수는 응시자격 증명서류 제출 없이 시험신청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특급 시험에 응시한 기록이 있는 사람 중 당해 시험에 응시자격이 있는 사람)</p>															
	수수료	<p>응시수수료 : 제1차시험 15,000원, 제2차시험 20,000원</p> <p>※ 계산서는 현금(무통장입금 포함)으로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발급됩니다.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에는 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p>															

시험 접수	접수 내용변경	원서접수 기간 내에는 취소 후 재 접수가 가능하나, 원서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접수 내용 변경 불가																														
	제출서류	붙임 참조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기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f4cccc;"> <th style="width: 15%;">구분</th> <th style="width: 55%;">원서접수 및 경력서류제출 기간</th> <th style="width: 30%;">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강습수료자</td>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시험 일정 등 참조</td> <td rowspan="3">• 토요일, 공휴일은 방문 접수 불가</td> </tr> <tr> <td>• 학·경력접수자</td> </tr> <tr> <td>• 가접수자</td> </tr> <tr> <td>• 가접수자 추가서류제출</td> <td style="text-align: center;">일정 추후안내</td> <td>• 추가경력서류 제출 • 토요일, 공휴일은 접수불가</td> </tr> </tbody> </table> <p>※ 원서접수 및 서류제출 마감 이후에는 접수 불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경력접수자”란 관련 학과 학위, 소방공무원 경력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경력으로 접수하는 사람을 말함 2) “가접수자”란 시험접수일 기준으로는 경력기간이 모자라서 응시자격에 해당되지 못하지만 시험응시일까지 경력을 유지한다면 응시자격에 해당되어 시험에 접수하는 사람을 말함 3) “강습수료자”란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강습을 수료한 사람을 말함 					구분	원서접수 및 경력서류제출 기간	비고	• 강습수료자	시험 일정 등 참조	• 토요일, 공휴일은 방문 접수 불가	• 학·경력접수자	• 가접수자	• 가접수자 추가서류제출	일정 추후안내	• 추가경력서류 제출 • 토요일, 공휴일은 접수불가															
구분	원서접수 및 경력서류제출 기간	비고																														
• 강습수료자	시험 일정 등 참조	• 토요일, 공휴일은 방문 접수 불가																														
• 학·경력접수자																																
• 가접수자																																
• 가접수자 추가서류제출	일정 추후안내	• 추가경력서류 제출 • 토요일, 공휴일은 접수불가																														
환불 규정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bottom: 10px;">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f4cccc;"> <th style="width: 70%;">구분</th> <th style="width: 30%;">금액</th> </tr> </thead> <tbody> <tr> <td>시험시행 5일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td> <td style="text-align: center;">전액 환불</td> </tr> <tr> <td>시험시행일 4일전부터</td> <td style="text-align: center;">환불 불가</td> </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예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bottom: 10px;">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f4cccc;"> <th style="width: 10%;">요일</th> <th style="width: 15%;">월</th> <th style="width: 10%;">화</th> <th style="width: 10%;">수</th> <th style="width: 10%;">목</th> <th style="width: 10%;">금</th> <th style="width: 15%;">토</th> </tr> </thead> <tbody> <tr>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5일전</td> <td style="text-align: center;">4일전</td> <td style="text-align: center;">3일전</td> <td style="text-align: center;">2일전</td> <td style="text-align: center;">1일전</td> <td style="text-align: center;">특급 시험일</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환불 기준</td>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 전액환불</td> <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환불불가 →</td> </tr> </tbody> </table> <p>※ 시험응시수수료 환불신청은 시험시행 5일 전일까지 가능. 단, 방문 환불신청의 경우 토요일, 공휴일은 불가</p>					구분	금액	시험시행 5일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전액 환불	시험시행일 4일전부터	환불 불가	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5일전	4일전	3일전	2일전	1일전	특급 시험일	환불 기준	← 전액환불		환불불가 →			
구분	금액																															
시험시행 5일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전액 환불																															
시험시행일 4일전부터	환불 불가																															
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5일전	4일전	3일전	2일전	1일전	특급 시험일																										
환불 기준	← 전액환불		환불불가 →																													
시험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차시험 : 서울, 부산, 인천, 대전충남, 경기 전용교육장 • 제2차시험 : 별도 안내 • 시험장소는 원서접수 기간 중 원서 접수 시 수험자가 직접 선택 • 시험장 위치는 www.kfsi.or.kr 접속하여 “안전원소개-찾아오시는길” 참조 																															
응시표 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응시표는 방문접수 시 접수 현장에서 출력, 인터넷접수의 경우 접수가 완료되면 응시자가 출력 • 시험응시표는 시험 당일까지 응시자가 인터넷으로 재 출력 가능 																															

<p>시험 응시자</p> <p>유의 사항</p>	<p>1. 응시자는 응시표에서 정한 입실 시간까지 응시표, 신분증,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시험감독관의 시험안내에 따라야 합니다.</p> <p>1) 응시원서 접수 시 본인이 선택한 지역 및 시험장소의 지정된 좌석 이외의 장소 및 좌석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p> <p>2) 응시자는 시험시행 전까지 시험장소 및 교통편을 확인 후 입실시간 전까지 시험당일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하여야 합니다.</p> <p>3) 응시표와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을 경우 응시할 수 없습니다.</p> <p>※ 신분증의 범위 : 공무원증,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발급확인서 포함), 운전면허증, 여권</p> <p>4)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경우 시험 시행일 전에는 안전원 홈페이지에서 재출력 가능하며, 시험당일에는 시험감독관의 사전확인을 받아야 응시가 가능합니다. 이때 응시자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p> <p>2. 제1차(객관식)시험의 OMR 답안지 작성은 검정색 필기구(컴퓨터용 흑색 수성 싸인펜 등)를 사용하여야 합니다.</p> <p>1) 답안지에 시험교시, 응시번호, 성명 등을 기재·표기하지 않거나 틀리게 작성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p> <p>2) 시험시간 중에는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을 일체 사용할 수 없습니다.</p> <p>3. 제2차(서술형 주관식)시험 답안작성은 검정색 또는 청색 필기구 중 동일한 필기구만을 사용하여 답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연필, 사인펜, 기타 유색필기구로 작성된 해당 답안은 “0”점 처리됩니다.</p> <p>※ 제2차 시험 답안 정정 시에는 정정할 부분을 두줄(=)로 긋고 다시 기재하기 바랍니다.</p>
<p>시험 응시자</p> <p>유의 사항</p>	<p>4. 시험실내에는 어떠한 통신장비(휴대전화기, 무전기 등), 태블릿PC, 스마트워치 등 액정 및 메모리 기능이 있거나 다지털카메라, 녹음기 등 촬영 및 녹취가 가능한 기기를 사용할 수 없으며, 시험 중 휴대할 수 없습니다.</p> <p>※ 휴대전화 등 금지품목은 배터리와 본체를 분리하여 가방에 보관하거나 가방 미소지자는 제공된 봉투에 넣어 보관</p> <p>5. 제1·2차 시험 모두 공학용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으나 반드시 시험감독관의 확인 하에 초기화(리셋)를 하고, 메모리카드를 제거한 이후에 사용하여야 하며, 동 사항을 위반 시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p> <p>6. 시험문제지 및 답안지는 공개하지 않으며, 시험종료 후에는 답안지와 함께 문제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문제지를 반납하지 않거나 응시표 등에 문제를 옮겨 적어 가는 경우는 부정행위로 처리합니다.</p> <p>7.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2년간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p> <p>8. 시험 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사용하거나 퇴실할 수 없으니 과다한 수분 섭취를 자제하고 배탈 예방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시험시간 1/2 경과 후부터 시험지 답안지 제출 후 퇴실이 가능하니 시험응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p> <p>※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퇴실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험포기각서」를 제출 한 후 퇴실 가능</p>

- 9. 시험실에는 별도로 시계가 준비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각자 손목시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단, 휴대전화는 시계대용으로 사용불가하며, 손목시계는 시각만 확인할 수 있는 단순한 것을 사용하여야 함.
- 10. 시험장 내에서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시험장의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 11. 응시자는 시험시행 공고문, 응시표, 시험장 공고문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을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12. "가점수자"는 "경력 점수자" 접수기간 중 시험응시원서 및 경력관련서류를 제출하고, 시험응시일 이후 기간 내에 추가 경력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응시자격 기준 미달인 경우 불합격 처리합니다.
- 13. 시험시간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지 제출요구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할 때는 당해 시험은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1차 시험 답안지 제출 불응자는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14. 시험장은 주차공간이 협소하며, 지역별로 주차료가 징수되는 경우가 있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교통혼잡 등으로 정해진 시간에 입실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 안전원 사이트 로그인
- 2. 안전원 사이트 “소방안전교육-시험신청” ⇨ “시험일정” 클릭 ⇨ 응시하고자하는 지부 시험날짜 클릭 ⇨ 시험신청자 정보입력 ⇨ 신용카드 결제 또는 LG데이콤 무통장 계좌할당 및 입금 ⇨ 시험신청 완료

인터넷
시험접수 및
결제방법
안내

시험신청

홈 > 소방안전교육 > 시험신청·점수확인 > 시험 신청

시험일정 전체보기 나의 강의실

시험과정	구분	시험일정	시험안내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특급시험	시험일정	HWP 시험안내	PDF 시험안내
	재시험	시험일정	HWP 시험안내	PDF 시험안내
1급 소방안전관리자	학·경력	시험일정	HWP 시험안내	PDF 시험안내
	재시험	시험일정	HWP 시험안내	PDF 시험안내
2급 소방안전관리자	학·경력	시험일정	HWP 시험안내	PDF 시험안내
	재시험	시험일정	HWP 시험안내	PDF 시험안내
3급 소방안전관리자	학·경력	시험일정	HWP 시험안내	PDF 시험안내
	재시험	시험일정	HWP 시험안내	PDF 시험안내

※ 원서접수 기간 중에만 시험일정이 안전원 인터넷에 등재됩니다.

지부별
연락처

- 근무시간 : 09:00 ~ 18:00
- 지부별 연락처

	지부(지역)	연락처	지부(지역)	연락처
	서울지부(서울 영등포)	02-2671-9076~8	부산지부(부산 금정구)	051-553-8423~5
	인천지부(인천 서구)	032-569-1971~2	대구경북지부(대구 중구)	053-429-6911,7911
	경기지부(수원 팔달구)	031-257-0131~3	울산지부(울산 남구)	052-256-9011~2
	경기북부지부(파주)	031-945-3118,4118	경남지부(창원 의창구)	055-237-2071~3
	대전충남지부(대전 대덕구)	042-638-4119,7119	광주전남지부(광주 광산구)	062-942-6679~81
	충북지부(청주 서원구)	043-237-3119,4119	전북지부(전주 덕진구)	063-212-8315~6
	강원지부(횡성군)	033-345-2119~2120	제주지부(제주시)	064-758-8047 064-755-1193

[붙임] 시험접수 관련 제출서류

○ 기본 제출서류

- ① 시험응시원서 1부
 - ② 사진 1매(가로3.5cm×세로4.5cm)
 - ③ 실무경력관련 증빙서류 각 1부(“유형별 제출서류” 참고)
 - ④ 선임된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 특·1·2급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 ③, ④항은 경력시험접수자 중 처음으로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 한함

○ 유형별 제출서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실무경력(선임경력)사항 확인이 필요한 경우

1. 선임 및 해임여부가 기재된 수첩을 통해 경력기간 증빙이 가능한 경우(①~②제출)
 - ① 서류심사 신청서 1부 **[별지 1호] 서식**
 - ②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수첩(또는 해당 선임자격증) 사본 1부(원본지참)
2. 선임여부는 확인되나 경력기간 증빙이 필요한 경우(①~②제출)
 - ① 서류심사 신청서 1부 **[별지 1호] 서식**
 - ②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 이수확인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경력(재직) 확인서 **[별지 2호] 서식**
3. 선임여부 및 경력기간의 증빙이 모두 필요한 경우(①~③제출)
 - ① 서류심사 신청서 1부 **[별지 1호] 서식**
 - ②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 이수확인 또는 4대보험가입증명서 중 하나
 - ③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경력(재직) 확인서 1부 **[별지 2호] 서식**

학력 확인이 필요한 경우

1. 졸업(또는 학위) 증명서 1부
2. 졸업증명서에 기재된 학과명이 관련고시의 학과명과 동일한 경우 : 졸업(또는 학위) 증명서
3. 졸업증명서에 기재된 학과명이 관련고시의 학과명과 다른 경우(①~②제출)
 - ① 졸업(또는 학위) 증명서 1부
 - ② 동일학과 인정확인서(안전원양식) 및 동일학과 인정 검토 의견서(안전원양식) 각 1부

※ 성적증명서(이수과목 확인용)를 동일학과 인정 검토의견서(별지4호 서식)의 첨부로 제출
⇒ **[별지 3호] 및 [별지 4호]서식**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 이수 확인이 필요한 경우

1. 졸업(또는 학위) 증명서 1부
2. 이수과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성적증명서 등) 1부
 - ① 1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접수 :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 12학점 이상 이수
 - ② 2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접수 :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 6학점 이상 이수

시험응시자 증빙서류 제출시 유의사항

1. 모든 증빙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함. 단, 관공서 팩스민원 또는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증명서는 원본으로 인정함
2. 증빙서류 중 안전원 전산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한 것으로 간주함.
예)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증빙서류, 실무교육 이수확인서
3. 경력사항에 대해서 유선 또는 문서 등으로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허위 사실이 확인시 시험 응시가 불가함
4. 2개 이상의 대상물에서 근무한 경우 소방안전관리(보조)자 경력(재직) 확인서는 대상물별 대표 자로부터 각각 발급 받아야 함

<input type="checkbox"/> 특급 <input type="checkbox"/> 1급 <input type="checkbox"/> 2급 <input type="checkbox"/> 3급					<h2 style="margin: 0;">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경력(재직) 확인서</h2>								
성명	(한글)		생년월일	년 월 일									
주소				연락처	- 휴 대 폰 : - 일반전화 :								
증명사항	소속 및 직위	선임기간		경력기간	담당업무내용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p>*상기 경력기간은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을 말하며, 같은 조 제3항(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자 등)에 따라 선임된 경력은 제외함</p>													
용도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시험응시 제출용												
<p>상기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본 확인서가 소방관계법령에 의한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응시에 필요한 경력입증용임을 인지함은 물론 이 증명이 허위, 위조 등으로 인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형사처벌(공·사문서위조, 변조 등)도 감수하겠음을 명심하고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p>													
대상물명 또는 상호 : _____ 소재지 : _____ (연락처 : _____) 사업자등록번호(또는 대표자 생년월일) : _____ 대 표 자 : _____ (인)				년 월 일									
				<table border="1" style="margin: auto;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colspan="2" style="padding: 5px;">발급자</td> </tr> <tr> <td style="width: 20px; padding: 5px;">소속</td> <td style="padding: 5px;"></td> </tr> <tr> <td style="padding: 5px;">직위</td> <td style="padding: 5px;"></td> </tr> <tr> <td style="padding: 5px;">성명</td> <td style="padding: 5px; text-align: center;">(인)</td> </tr> </table>		발급자		소속		직위		성명	(인)
발급자													
소속													
직위													
성명	(인)												
<h1 style="margin: 0;">한국소방안전원장 귀하</h1>													

[별지서식4]

동일학과 인정 검토의견서

- 학교명 :
- 성 명 :
- 학위취득일자 :
- 응시자의 졸업 학과명 :
- 동일학과로 인정받고자 하는 학과명 :

가. 응시자 졸업학과 교육과정에 대한 설명 (교과목 등으로 설명)	나. 동일학과로 인정받고자하는 해당학과 교육과정에 대한 설명 (교과목 등으로 설명)	동일학과 인정에 대한 의견
		※ “가” 및 “나”항과 첨부 성적 증명서 이수과목을 참조하여 기술
※ 기타 의견		

응시자 졸업학과 학과장 확인 :

직인

첨부 : 이수과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수과목 확인용, 성적증명서 등) 1부.